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830
----------	-------

발의연월일 : 2026. 2. 12.

발 의 자 : 양부남·김한규·민병덕
박상혁·박은정·박정현
서영석·이개호·이정문
정준호·최혁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체납자료 제공 등 일정한 제재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의 경우에는 출국금지, 감치 등의 강제조치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같은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 납부 강제수단의 측면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시에도 출국금지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국세·지방세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일관된 체납 징수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제재를 병행하여 징수율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의9,

제7조의10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부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8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7조의9 및 제7조의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9(출국금지 요청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3천만원 이상(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을 포함한다)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체납자가 체납액을 전부 납부한 경우
2. 체납자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10(채납자의 감치)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채납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채납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납부될 때까지 그 채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1.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3회 이상 채납하고 있을 것

2. 채납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채납 발생일부터 각각 1년 이상이 경과하였을 것

3. 채납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4. 채납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채납하였을 것

5. 해당 채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을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납자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채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채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채납자의 감치를 신청하기 전에 채납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여진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 사실로 인하여 다시 감치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 감치집행을 종료하여야 한다.

⑦ 징수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감치집행 시 감치대상자에게 감치사유, 감치기간, 감치집행의 종료 등 감치결정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고 그 밖에 감치집행에 필요한 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7조의9(출국금지 요청 등) ①</u> <u>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u> <u>사유 없이 체납한 3천만원 이</u> <u>상(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u> <u>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u> <u>액을 포함한다)의 지방행정제</u> <u>재·부과금을 체납한 자 중 대</u> <u>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u> <u>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u> <u>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u> <u>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u> <u>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u> <u>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출국금</u> <u>지를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u> <u>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정보</u> <u>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u> <u>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u> <u>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등을</u> <u>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u> <u>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u> <u>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u>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u> <u>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u>

<신 설>

한다.

1. 체납자가 체납액을 전부 납
부한 경우

2. 체납자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권의 소
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요
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10(체납자의 감치) ① 범
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
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
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지방행
정제재·부과금이 납부될 때까
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1.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3회
이상 체납하고 있을 것

2. 체납된 지방행정제재·부과
금이 체납 발생일부터 각각 1

년 이상이 경과하였을 것

3. 체납된 지방행정제재·부과
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
일 것

4. 체납된 지방행정제재·부과
금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
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
납하였을 것

5.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
요성에 대하여 「지방세기본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을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
자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모
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의 주
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
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
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에 따라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
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
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
여진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 사
실로 인하여 다시 감치되지 아
니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
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지방
세를 납부한 경우 감치집행을
종료하여야 한다.

⑦ 징수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감치집행 시 감치대상자에게
감치사유, 감치기간, 감치집행
의 종료 등 감치결정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고 그 밖에 감치
집행에 필요한 절차에 협력하
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
는 재판의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
칙으로 정한다.